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30 선고 2022가단5230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유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6. 30

주 문

1. 피고와 임BB 사이에,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xx. xx.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xx. xx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임BB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. xx. xx. 접수 제x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 - 나.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. xx. xx. 접수 제x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